

## 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2. 4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 및 운용  
조례중 개정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따로 붙임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따로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997년 2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노 재 균



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997. 2. .

산업건설위원회

전문위원

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1997년 2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1997년 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 안 이 유

기부금품모집 규제법('95. 12. 30) 및 동법시행령('96. 7. 1)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조성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기금의 조성규정을 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, 이자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함.

3. 검 토 의 견

본 안건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됨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와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